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안내 (시행예정 2021.05.03)

“특수관계 사전심사”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세관에서 미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전심사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이 공고되어 2021.05.03 시행 예정이며,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사항

1. 훈령 명칭 변경

훈령의 목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훈령의 명칭을 현행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심사신청서 접수 및 심사 부서에 관한 개정 사항

(1) 신청서 제출을 위한 본부세관의 심사부처 규정 삭제

전국 세관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세관별 신청서를 접수하는 심사부서가 다르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심사부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문	현 행	개 정
제5조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고시 제61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은 <u>본부세관장(심사총괄과장, 납세지원과장 또는 심사과장)</u> 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본부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 <u>제45조</u> ----- ----- <u>본부세관장을</u> ----- ----- ----- ----- ----- -----

(2)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는 본부세관의 배정 원칙 보완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할 때,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철회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거 심사를 검토하였던 세관장에게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문	현행	개정
제5조 신청서의 접수 등	<p>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고시 제6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다만, 신청인이 업체 본사 이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3호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4호 이하의 순서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부세관장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가 신청된 경우에는 최초로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3. 과거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신청한 신청인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4.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할 본부세관장 5. 제4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한 사전상담을 실시한 본부세관장 6.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 	<p>1.~2. (현행과 같음)</p> <p>3. <u>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철회한 후 새롭게 신청한 경우 직전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u></p> <p>4.~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3. 사전심사 · 재심사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

(1)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절차 보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49조의 연례보고 검토 결과에 따른 사유 이외의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현행	개정
제11조 사전심사 변경 신청 등의 처리	〈신설〉	① <u>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경·철회·취소의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2) 재심사 신청 시 처리 절차 간소화

사전심사의 재심사는 사전상담을 생략하고, 본부세관장의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와 동일한 경우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현행	개정
제12조 재심사 신청의 처리	〈신설〉	<p>① 법 제37조제3항 및 고시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관세평가분류원장과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6조에 따른 <u>사전상담을 생략</u>하고 고시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p> <p>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재심사 검토 의견이 당초 심사의 <u>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 제14조제1항의 실무회의를 생략</u>할 수 있다.</p>

(3)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절차 신설

적용기간 연장 신청 시 검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조문	현행	개정
제13조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신설〉	<p>①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및 고시 제50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본부세관장은 해당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의 전제가 된 <u>거래내용 및 시장 상황 등의 변동여부와 적용기간 동안의 연례보고 내용의 적정 여부</u> 등을 확인하여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u>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에게 통보</u>하여야 한다.</p>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_개정 전문
- [붙임2]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_입안계획서
- [붙임3]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_조문대비표

| Contact



소유훤 관세전문가

T 070-6011-3012
E yhso@esein.co.kr



정현욱 관세전문가

T 070-4353-1513
E hujung@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